

# 예산총칙

2023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47,801,135	16,434,034
일반회계	542,168,915	16,265,067
특별회계	5,632,220	168,967
기타특별회계	5,632,220	168,967
의료급여특별회계	515,006	15,450
지하수관리특별회계	116,000	3,480
주차장특별회계	4,886,474	146,594
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	100,598	3,018
재정비축진특별회계	14,142	424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.

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.

제 5 조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이 없음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,641,429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8,300,000천원으로 한다.